

**예 가 광안 용 지 구호계**

분류기호 문서번호	사회 1473- ( )	전화번호 206	전 결 규 정 조 1항 국 장 전 결 사 랑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48/20		
보존년한			
보조 기관	제1부시장	협 법무 담당과 시민과장 법무 계장 ( ) 본 서 관 리 계 장 사회 계장	
	보사국장		
	사회과장		
기안책임자	김민관 (75.4.24)		법무 총 사 사 1975. 4. 25 1975. 4. 25 보정신
경수 참조	유신 참조	각 안 참 조	발 신
개 목	서울특별시립 후생식당 운영요금증 개정		
"제1안" 내부 결재			
1. 서울특별시립 후생식당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립후생식당 운영요금증 설정 운영하고 있는 바,			
2. 현재 동요금제 2의 "마"항에 의거 식대를 1기당 20원을 징수 하고 있으나 금번 양곡대(소맥분) 인상으로 원료인 건면 1기당 (255그램) 가격이 31.07원이 되므로 원료 대만이라도 받고자 식대 1기당 20원을 30원 으로 인상코자 시립후생식당 운영요금 제2의 "마"항중 「매식자로부터 징수 하는 식대는 1기당 20원으로 한다를 「매식자로부터 징수 하는 식대는 1기당 30원으로 한다를 개정코자 재검을 바랍니다.			
첨부 시립후생식당 운영요금 개정안 1부.			이 2/0
"제2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정본 . 서울특별시립 . 후생식당 . 운영요금 증부 . . . . .			

1. 사회 1473\_1605 (74. 12. 31)와 관련임.

2. 서울특별시립 후생식당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립후생  
식당 운영요강을 심정 운영하고 있는바,

3. 금번 양곡대(소맥분)인상으로 이에따른 금식가격 인상방식에  
따라 동요강령 제2의 "마"항을 개정 별첨 송부하되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식당내외에 게시하고 금식대상자들에게 본 뜻을 주지시키고 식당운영에  
자질없도록 함것.

4. 이 요강을 75. 5. 1부터 시행한다.

첨부 시립후생식당 운영요강 1부 이 끝

수신처 시청 2,3,4,5,6,7,8,10,11. 서울 양서출장소. **보무선장관**

서울특별시립후생식당 운영요강개정안

---

요강개정조항	기 정 안	개 정 안
시립후생식당 운영요강 제 2의 "마"항	1. 매식자로부러 징수하는 식대는 <u>1기당 20원</u> 으로 한다.	1. 매식자로부러 징수하 는 식대는 <u>1기당 30원</u>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예규 제  
**예 규**

서울특별시립 후생식당운영요강중개정안

1. 목적

이 요강은 서울특별시립 후생식당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시립 후생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 부동산로자 및 국민영세 행상인 등으로 하여금 저임가로 주식(곡수1기식)을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및 자활향상 또는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영방법

가. 본 식당은 구청장 및 출장소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나. 본 식당은 매일 10:30분 개장한다.

다. 식사는 1인 1인 1기 소맥본 250그램 (건면 255그램)으로 한다.

타. 부식비는 예산범위내로 한다.

마. 매식자로부터 징수하는 식대는 1기당 30원으로 한다.

바. 본 식당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식당명		설치월일	위 치
구 명	식당명칭		
중 구	상가후생식당	73. 12. 11	중구 을지로6가 17번지
동 대문	청량미동 "	64. 8. 13	동대문구 청량미동 205_772
성 동	마장동 "	64. 3. 15	성동구 마장동 275번지
"	금호동 "	68. 7. 15	성동구 금호동 1265_51
"	송정동 "	74. 3. 15	성동구 송정동 74번지
성 북	종암동 "	64. 7. 31	성북구 종암동 3_72호
"	하월곡동 "	71. 1. 18	성북구 하월곡동 산2번지
도 봉	미아동 "	71. 6. 30	도봉구 미아동 837_91호
"	창 동 "	73. 12. 17	도봉구 창동 558번지
서대문	북아현동 "	64. 12. 26	서대문구 북아현동 129외 37호
"	상산동 "	74. 3. 15	서대문구 상산동 118번지

마포	망원동우생식당	74. 5. 1.	마포구 망원동 452-1
영등포	영등포동 "	61. 12. 29	영등포구 영등포동 469-1
"	시흥동 "	70. 8. 15	" 시흥동 266-281
"	신정동 "	71. 2. 21	" 신정동 정착지내
관악	사당동 "	71. 2. 24	관악구 사당동 150
"	봉천동 "	73. 12. 14	" 봉천동 580
"	신림동 "	75. 1. 1	" 신림동 산104
양서	신월동 1단지	72. 11. 30	영등포구 신월동 정착단지내
"	신월동 2단지	73. 11. 1	" 신월동 "
계	20개소		

### 3. 식대 징수방법

가. 식당운영에서 징수한 세금은 위월 17시까지 법지 서식(제3호)에 의하여 해당구청및 읍장소 사회과장(출장소:총무과장) 책임하여 시금고에 불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1일 연장할수 있다.

나. 공휴일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4. 운영비 경리

가. 주식용 양곡및 부식(현물배정) 또는 기타 운영비는 해당구청및 읍장소에 배정 영답 경리케 한다.

나. 식당운영 및 식대징수를 위하여 식당책임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지정하여 담임케 한다.

다. 식당 담임 직원은 식당운영 사항을 구성장 및 출장소장에게 법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운영상황을 일보로서 보고하고 구성장 및 출장소장은 법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운영상황을 월보로서 시장에게 매 위월 5일까지 보고한다.

5. 이 요강은 1975. 4. 1부터 시행한다.

1975. 4.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립 후생식당 운영상황 보고서

197 년 월 일  
 구청장 (인)  
 출장소장

서울특별시립 귀하  
 아래와 같이 운영상황을 보고합니다.

차 원 임 (인)  
 지 원 임 (인)

1. 금식인원 및 수입금액

구분 종별	구분 인원	단 가	수입금액	금식인원		수입금액		비고
				부	계	부	계	
국 수								

2. 견면 수발상황

구분 종별	구분 단위	수입량	소비량	수입량		소비량		지고량	비고
				부	계	부	계		
견 면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립 후생식당 운영상황 일보

197 년 월 일

서울특별시립 후생식당 담당.

직 성 명 (인)

( 월 일분)

구 경 장 귀하  
을 징 소 장

이태와 같이 운영상황을 보고합니다.

1. 급식인원 및 수입금액

구분	급식 인원	단가	수입금액	급식인원 수 계	수입금액 수 계	비 고
종 별						
국 수						

2. 견면 수불 상황

구분	단위	수입량	소비량	수입량 수 계	소비량 수 계	재고량	비고
종 별							
견 면							



(별지 제 3호서신)

잡수입금납부서

197년 월

시 회 과 장  
총 무 과 장

세 무 과 장 귀하

이리와 같이 후생식당 수입금을 납부하시오니 영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목			납품금액	건 수	비 고
관	항	목			
잡수입	잡수입	후생식당수입			월 일본 식대임.


# 예 8/가

## 서울특별시립 후생식당운영요강 ~~(정령)~~ (현령)

### 1. 목적

이 요강은 서울특별시립 후생식당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시립 후생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 부동산로차 및 국민영  
 세 향상인 등으로 하여금 저임가로 주식(국수1기씩)을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및 자활향상 또는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2. 운영방법

- 가. 본 식당은 구청장 및 출장소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 나. 본 식당은 매일 10:30 분 개정한다.
- 다. 식사는 1인 1인 1기 소매향 250그램 (건면 255 그램) 으로 한다.
- 라. 부식비는 예산범위내로 한다.
- 마. 매식자로 부려 징수하는 식당은 기당  으로 한다.
- 바. 본 식당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식 당 별		설치월일	위 치
구 명	식당명칭		
중 구	상가후생식당	73. 12. 11	중구올지로6가 17번지
동 대문	청량리동 "	64. 8. 13	동대문구 청량리동205의772
성 동	마장동 "	64. 3. 15	성동구 마장동 275번지
"	급호동 "	68. 7. 15	성동구급호동 1265의51호
"	송정동 "	74. 3. 15	성동구 송정동 74번지
성 북	종암동 "	64. 7. 31	성북구종암동 3의 72호
"	하월곡동 "	71. 1. 18	성북구 하월곡동 산2번지
도 봉	미아동 "	71. 6. 30	도봉구 미아동 837의 91호
" 창	동 "	73. 12. 17.	도봉구 창동 558번지
서대문	북아현동 "	64. 12. 26.	서대문구북아현동 129의37호
"	성산동 "	74. 3. 15	서대문구 성산동 118번지

마 포	망월동 후생식당	76. 5. 1	마포구 망월동 452-1
영등포	영등포동 "	61. 12. 29	영등포구 영등포동 469-1호
"	시흥동 "	70. 8. 15	" 시흥동 266-287
"	신정동 "	71. 2. 21	" 신정동 정각지내
관 약	시암동 "	71. 2. 24	관악구 상암동 150번지
"	봉천동 "	73. 12. 14	" 봉천동 580번지
"	신림동 "	75. 1. 1	" 신림동 산104
양 서	신월동 1단지	72. 11. 30	영등포구 신월동 정각단지내
"	신월동 2단지	73. 11. 1	" 신월동 "
계	20 개소		

### 3. 식대 징수 방법

- 가. 식당운영에서 징수한 대금은 위월 17시 까지 별지 서식 (제3호)에 의하여 해당구청 및 출장소 사비과장 (출장소:총무과장) 책임하에 시금고에 불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일연장할수 있다.
- 나. 공휴일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4. 운영비 경리

- 가. 주식용 양곡 및 부식 (현물배정) 또는 기탁 운영비는 해당구청 및 출장소에 비정 영답 경리케 한다.
- 나. 식당운영 및 식대징수를 위하여 식당책임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지정하여 답임케 한다.

다. 식당 담임 직원은 식당운영 사항을 구청장 및 출장소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운영상황 일보로서 보고 (서식 2호) 하고 구청장 및 출장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운영상황 보고서로 시장에게 매 익월 5일까지 보고한다.

5. 이 요강은 1975. 1. 1. 부력 시행한다.

1975. 12.

서울특별시청

공 고

금번 당시 방침에 외거 후생식당 급식가격을 다음과 같이 인상하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인상일시: 1975. 5. 1.

2. 급식가격: 1기당 30원 (현재 20원)

3. 인상이유

가. 급식가격 1기당 20원을 3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금번 소맥분 가격인상으로 원가 1기당 52원이나 원료인 건면(255그램) 1기당가격이 37원으로 원료 대만 받기로 되었으니 이점 양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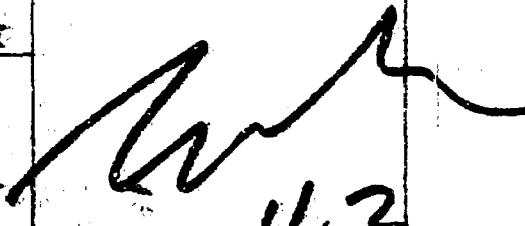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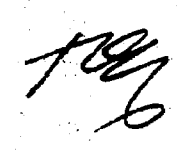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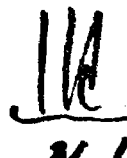

1975. 4. .

구 청 장

출장소장

# 厚生食堂運営実行旅死亡者處理追加豫算

## 措置計劃

			市長
社會課長	保社局長	第1副市長	 4.2
			
豫算課長	企劃管理官		

서울特別市

# 一. 厚生食堂運營單價引上案

## ○ 結 論

物價引上等要因으로 厚生食堂用  
副食 및 乾麵 製造單價를 아래와 같이  
引上코자 합니다.

区分 \ 内容	單位	'74	'75	增 減
副 食	1番當	12원	16원	33%
乾麵 製造單價	1kg	13"	17"	31%

※ 5月10日 기준 1餐 30원

## 1. 現 況

### 가. 規 模

相 所 數	1日 給食人數	豫 算
20	7,800名	132,724,000원

4132

(1日 363,600원  
1日 1人 46.60원)

11. 歳入歳出分析

区分	歳入		歳出		差額	
	予算	一番価格	予算	一番原価	総額	一番
'74	27,173,000 <sup>割</sup>	10 <sup>割</sup>	119,568,000 <sup>割</sup>	46.38	91,395,000 <sup>割</sup>	30.38
'75 当初	56,940,000	20	132,714,000	42.93	75,774,000	22.93
'75 引上時	56,940,000	20	143,439,000	47.98	86,499,000	27.98

12. 1食原価分析

年度	区分	小麦粉	雑穀製造料	副食費	燃料費	人件費	計
'74		20.83	3.20	11.65	1	3.70	42.38
'75 当初		20.83	3.20	12	1.40	5.50	42.93
'75 引上時		20.83	4.25	16	1.40	5.50	47.98

13. 年度別 對比表

年度	区分	單位	72	73	74	備考
	副食費	1番当	8.80	9.80	11.65	
	雑穀製造料	1kg	9.90	11.70	12.80	



## 2. 引上單價分析

### 가. 乾麵製造單價

단위: 원

區分 種別	單價 算出 對比			韓國 綜合 經濟研究所	業者要求
	74	75 引上	比率 (%)		
計	13	17	38	18.62	18원
動力費	0.21	1.29	294	1.45	
人件費	5.26	6.91	31	7.82	
包裝費	1.10	1.32	21	1.40	
食塩代	1.37	2.27	66	2.87	
棧板損料	1.12	1.19	37	0.23	
燃料費	1.19	1.23	3	1.23	
運搬費	0.77	0.91	17	0.91	
雜費	1.88	1.88	39	2.71	

### 나. 副食費 單價

단위: 원

區分 種類	單價 算出 對比			韓國 綜合 經濟研究所	業者要求
	74	75 引上	比率		
計	12	16	33 %	17.10	17원
단 무 지	2.40	2.88	17	2.97	
멸 치	4.20	6.60	57	7.35	
고추 가루	1.57	2.62	61	2.62	
조 미 료	1.12	1.26	12	1.33	
소 금	0.33	0.44	33	0.48	
파	1.99	1.58	-12	1.63	
간 장	0.66	0.66	4194	0.92	

### 3. 所要豫算判断

区分	内容	既存豫算	不足額	算出基據
計		132,714,000 円	10,725,000 円	
副食費		99,666,000	8,580,000	$(16-12 \text{ 円}) \times 7,800 \text{ 名} \times 275 \text{ 円}$
乾麵製造料		9,397,000	2,145,000	$(17-13 \text{ 円}) \times 1,950 \text{ kg} \times 275 \text{ 円}$

## 二. 行旅死亡者 處理單価引上策

。 結 論

行旅死亡者ノ其當處理單価를 아래와 같이 引上코자 합니다.

74	75	增 減
15,800 元	19,500 元	23.1%

### 1. 行旅死亡者 處理 現況

年度 区分	72	73	74	75 計劃
人 員	(1,800) 1,742	(1,680) 1,555	(1,680) 1,484	1,200
豫 算	21,600,000	18,600,000	22,176,000	18,960,000
實執行額	17,120,600	17,866,950	20,681,570	

( ) 内는 計劃人員

## 2. 年度別 單価 對比

区分 \ 年度	72	73	74
1 其當 單価	11,000 圓	11,490 圓 (0.00%)	15,800 圓 (30.0%)

## 3. 單価 分析

		74	75 引上案	經濟 研究所	原価 調査会	業者要求
		大	計	15,800	19,448	20,929 <sup>10</sup>
人	상여자로	3,034	3,594	3,729	4,007 <sup>20</sup>	
	運送費	5,471	6,714	7,469 <sup>12</sup>	7,448	
	때붙임	1,080	1,080	1,080	1,488	
	人件費	4,400	5,610	5,610	6,640	
	諸雜費	1,815	2,450	3,040 <sup>28</sup>	3,327 <sup>27</sup>	
			4197			

	計	17.067	17.067	14.474 <sup>21</sup>	16.963 <sup>13</sup>	14.466 <sup>20</sup>
小 人	상여자료	1.659	1.977	2.066	2.242 <sup>40</sup>	
	運送費	4.651	5.684	6.439 <sup>12</sup>	7.448	
	때불임	1.080	1.080	1.080	1.488	
	人件費	2.200	2.805	2.805	3.320	
	諸雜費	910	1.521	2.106 <sup>32</sup>	2.464 <sup>72</sup>	

#### 4. 所要豫算 判断

既存豫算	不足豫算	算出根據
18.960.000	6.216.000	$(19.500 - 15.800^{\text{원}}) \times 1.200\%$

## 5. 問 題 矣

當初 豫算上 '75 行旅死亡者 數를

1,200 名으로 計上하고 있으나 '74年度

水準인 1,600 名 程度로 行旅死亡者를

推定하고 이에따른 豫算도 追更

豫算에 反映 시켜야 할 것으로 判斷됨

※ 不足總額 12,240,000 원